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시계열 데이터 분석

- 2005~2019년 언론조정신청 및 언론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

김 정 민*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황 용 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국 문 초 록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허위정보의 생산, 전파, 확산이 용이해지면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 산정 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사건 및 법원의 언론 관련 판결을 분석하여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손해배상 사건의 흐름을 주요 시기별로 구분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나타난 변화와 차이를 법제도와 미디어 환경 변화의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연도별 손해배상 청구건수 및 청구액, 인용액의 증감추이에서 특징적 변화가 나타난 시기를 살펴본 결과,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 및 2013년 대법원의 기사삭제청구 인정 판결 전후 손해배상청구건수 증감 및 손해배상액 인용액에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법제도의 주요 변화 시점을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 및 2013년 대법원의 기사삭제청구권 판결 전후

* 제1저자, jmkim@pac.or.kr

** 교신저자, prohys@gmail.com

로 보고 시기별 손해배상 청구건수 및 인용액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시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건수의 증가와 손해배상액수의 하락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기별 손해배상 청구건수 증가 및 인용액의 하락 원인을 미디어 환경 및 법제도적 변화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미디어 산업 지형 변화의 측면에서는 매체수의 폭발적인 증가 및 포털 중심의 뉴스 소비로 인한 개별 언론사들의 영향력 약화가 원인으로 분석되었으며,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기사삭제청구권이라는 새로운 피해구제방법 도입과의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손해배상청구가 언론피해 구제방법으로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제도 및 언론 생태계 변화에 대한 맥락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주제어: 손해배상, 위자료, 언론조정, 언론소송, 명예훼손, 인격권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언론피해구제 법제의 변화와 손해배상청구
 - 1.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제도 변화
 - 2. 언론피해구제 방안으로서의 손해배상제도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 2. 연구대상 및 방법
- IV. 연구결과
 - 1. 연도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변화 추이와 특징
 - 2. 시기구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건수 및 인용액 변화
 - 3. 미디어 환경 및 법제도적 측면에서 본 손해배상 청구건수 및 인용액 변화 양상
- V. 결론 및 제언

I. 들어가며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문제는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손쉽게 정보를 생산, 공유, 전파할 수 있는 매체 환경이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용이하게 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¹⁾하고 있으며, 허위조작정보의 무분별한 확산과 그 폐해는 전 세계적 화두이기도 하다. 잘못된 사실 또는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들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해악을 끼치는 사례가 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재수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양상도 달라졌다.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의 기억과 관심에서 사라졌던 아날로그 기사와

1) 김남영 (2020. 11. 16.). 연예인 이어 일반인도 노린다...‘악플민국’의 민낯, 사이버 명예훼손 5년새 2배 급증. <한국경제>. URL: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111363751>

달리 디지털화된 정보는 인터넷상에 남아 언제든 검색이라는 도구를 통해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이재진·구본권, 2008). 전통적인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경우, 일시적인 파급력이 큰 대신 피해의 지속 가능성은 낮았던 반면, 인터넷매체로 인한 피해는 확산범위를 가늠하기 어렵고 영구히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현행 법률상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훼손, 초상권 등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는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 추후보도청구, 사전금지청구 등이 있다(김상우·이재진, 2015). 이 가운데 손해배상청구는 언론중재법 제3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고통 또는 재산상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방법이다.

그런데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급되는 손해배상의 액수가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바탕으로 언론사의 중대 고의·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고액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2020년 9월 29일 법무부가 영업활동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업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²⁾한 것과 함께 제21대 국회 개원 직후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³⁾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민법 개정안⁴⁾ 등이 발의되었다.

2) 법무부 공고 제2020-295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020. 6. 9.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4) 민법 일부 개정안, 2020. 12. 10.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이러한 입법 움직임에 대해 2021년 2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1.8%가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⁵⁾ 이는 언론사간 경쟁 심화로 낚시성 기사나 어뷰징(abusing)이 여전히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흔히 ‘가짜뉴스’로 불리는 악의적인 목적의 허위·왜곡보도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김민정, 2021).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형법상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언론중재법상 정정·반론보도청구 및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등 다양한 방식의 피해구제 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언론사에 징벌적 성격의 고액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고액화 논의는 결국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부합하는 적절한 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보도 내용, 피해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언론사의 규모, 피해 확산 범위 등 다양한 산정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된다. 따라서 적정 손해배상액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 산정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관련 시계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론 관련 손해배상사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언론중재법 제정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절차에 손해배상이 도입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가 처리한 손해배상 사건 및 같은 기간 언론 관련 판결 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요 법제적 변화 시기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제도 및 미디어 생태계

5) 김겨레 (2021. 2. 10.). [리얼미터]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찬성 61.8%.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59846628949208&mediaCodeNo=257>

변화의 맥락에서 언론 관련 손해배상사건의 변화가 나타내는 의미를 도출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손해배상액 관련 입법 논의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언론피해구제 법제의 변화와 손해배상청구

1.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제도 변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제도는 정정보도청구권 및 언론중재제도가 법률에 처음 규정된 1980년 제정 언론기본법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언론기본법 제정 이전에도 민법 제764조에 따라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 또는 사죄광고가 인정된 경우가 있었지만, 언론기본법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회복의 방법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언론중재제도’라는 소송 외 언론피해구제절차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양경승, 2001). 다만 언론기본법상 정정보도청구는 피해자가 언론보도에 언급된 사실적 진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는 현재의 정정보도청구와는 차이가 있다. 연구자들은 언론기본법상 ‘정정보도청구’의 내용이 사실적 주장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게재해줄 것을 요구하는 반론보도청구에 가까워 실질적으로는 최초의 반론권 도입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양경승, 2001; 이승선, 2011 등).

이승선(2011)은 언론중재제도 도입 이후 법제적으로 중요한 변환 시기를 1) 1987년 언론기본법 폐지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간법’) 제정, 2) 1996년 정간법 개정, 3)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4)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보았다. 언론법제 연구의 30년간 호

를 분석한 이재진·박성순(2015)도 언론중재제도의 중요한 변천시기를 동일하게 구분, 적용했다.

최초로 반론권 제도를 법제화한 언론기본법은 1987년 폐지되었지만 해당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정정보도청구권(실질적 반론권)과 언론중재위원회 설치 조항은 새롭게 제정된 정간법에 그대로 이어졌다. 언론기본법이 언론의 공적책임을 과도하게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표현물을 압수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으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정간법에는 언론기본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이 유지된 것은 물론 범죄보도 관련 피해구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추후보도청구권’이 신설되었다(이승선, 2011). 이후 1996년 정간법 개정 시에는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 기존 ‘정정보도청구권’으로 규정되었던 내용을 ‘반론보도청구권’으로 바로잡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신청취지를 반영해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직권중재결정’이 도입되었다.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된 언론중재법은 정간법,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등 개별 매체법에 분산되어 있던 언론피해구제절차를 단일법으로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⁶⁾ 언론중재법 제5조는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인격권으로 통칭하며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유형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한 권리침해의 논의가 명예훼손 중심에서 초상권, 음성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확장되었다. 또 언론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한 청구권으로 정정·반론보도 외에 손해배상도 도입되고, 대상매체에 인터넷신문이 포함되면서 언론피해구제 방법과 대상에 관한 담론도 다양해졌다.

6) 국가법령정보센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유 참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6565&ancYd=20050127&ancNo=07370&efYd=20050728&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2009년에는 조정·중재 대상 매체에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IPTV를 포함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법의 제정 목적(법 제1조)도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에서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로 개정되었다. 이는 언론피해구제의 범주가 전통적인 언론사에서 언론기사를 매개하는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이승선, 2011).

〈표 1〉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률의 변화 시기 구분 ⁷⁾

적용법률	시기 구분	주요 변화 내용
언론기본법	1981년~	· 반론권제도 및 언론중재절차 도입
정간법	1987년~	· 반론권제도 및 언론중재절차 존치 · 추후보도청구권 신설
	1996년~	· 반론보도청구의 법적 성격 재정비 · 직권중재결정 도입
언론중재법	2005년~	·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권 도입 · 대상매체에 인터넷신문 포함
	2009년~	· 대상매체에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 등) 포함

2. 언론피해구제 방안으로서의 손해배상제도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 중 하나인 손해배상은 언론중재법 제3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 또는 재산상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구분되는데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회복 방법으로서의 손해배상은 주로 민법 제751조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위자료를 의미한다(권태상, 2020; 김상우 외, 2015; 노만

7) 이승선(2011)이 정리한 언론중재제도의 전개과정에 따른 구분을 바탕으로 주요 법제 내용을 요약, 재정리하였다.

경, 2005 등). 언론보도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 손해가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한계 때문에 인용된 사례는 많지 않다(이봉수, 2015).

한편, 위자료의 법적 기능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하나는 발생한 비재산적 손해를 계량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더라도 금전배상을 통해 손해의 전보가 가능하다고 보는 배상설(賠償說)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해자의 귀책사유에 적합한 금액을 위자료로 부과함으로써 일종의 벌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제재설(制裁說)이다(노만경, 2005; 이창현, 2017). 이와 유사하게 김민정(2021)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만큼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전보적(compensatory) 손해배상과 가해자가 행한 행위의 부당성을 근거로 해당 행위를 징벌하고 재발 억제에 초점을 맞춘 징벌적(punitive) 손해배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밖에도 위자료를 통해 피해자가 입은 인격권 침해 등을 만족시키는 기능, 일반적 인격권 침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예방기능, 손해의 전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를 참작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기능 등이 추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권태상, 2020; 노만경, 2005 등).

현재 언론중재법 제30조 및 민법 제750조 등에 따른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 전보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법원은 <표 2>와 같이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발생한 손해를 가늠하기 위한 방법으로 1) 언론보도의 내용, 2) 피해자 측 사정, 3) 가해자 측 사정, 4) 언론보도 이후의 제반사정 등을 참작요소로 삼고 있다(허만, 1999; 노만경, 2011).

〈표 2〉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판결의 위자료 산정 요인 및 항목

산정요소	참작사유
언론보도의 내용	- 보도매체(신문, 방송 등) 및 기사의 신속성(일간, 주간, 월간 등) - 기사의 내용과 크기 - 기사 게재 경위와 목적 / 공익성 유무와 정도 - 진실성 여부 / 비방성 및 악의성 정도 - 피해자 특정 여부 / 피해의 종류와 성격 - 보도의 사회적 영향 및 영향의 즉각성, 지속성, 회복곤란성
피해자측 사정	1) 개인인 경우 - 피해자 연령, 성별,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 피해자의 신분 및 사회적 지위 2) 법인인 경우 - 규모, 영업실적, 지명도, 신용도
가해자측 사정	- 발행부수 및 공신력 - 독자의 구성 - 회사의 규모, 재산, 재정상태 - 보도이후의 태도
언론보도 이후의 제반사정	- 자발적인 기사 정정, 취소 여부 -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 여부

그러나 실질적으로 법원이 언론보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정할 때 위의 산정요소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계량화되어 있지 않다. 이봉수(2005)는 대부분의 언론 관련 판결에서 손해배상액의 책정은 기존 판례에 기초하여 판사의 재량에 의해 가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으로 조정·중재절차에 손해배상청구가 도입되면서 언론중재위원회는 적정 손해배상액 책정을 위한 산정표를 마련했다. 손해배상 산정표는 손해를 측정하는 요인들을 11개⁸⁾로 정한

⁸⁾ 채점표는 ①공익성(5점), ②진실성(10점), ③상당성(10점), ④표현방법(15점), ⑤전파력(15점), ⑥보도의 형식(10점), ⑦사회적 지위(5점), ⑧사회적 평가의 저하 정도(15점), ⑨피해의 지속성, 회복곤란성(10점), ⑩언론사의 인력, 자산 규모(5점), ⑪보도 후 후속 조치의 태도(적극적 -50%, 양호 30% 미흡 -10%)의 산정요인으로 구성되었다(장현우, 2011 참조).

후 각 요인별 배점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합산하는 방식이었는데, 산점 기준에 따라 합산된 점수는 1점당 10만원으로 보고 1,500만원을 상한액으로 두었다(장현우, 2011).

이와 같은 채점방식의 산점표는 법원의 산정요인을 토대로 손해배상액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으나 제출된 서면과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소송과 달리 당사자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조정절차의 특성상 세부 산정요인을 판별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조정과정에서 크게 활용되지는 않았다(장현우, 2011).

이후 언론중재위원회는 기존 채점표 방식 대신 최저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가액 요인과 감액 요인을 고려해 적정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가감표 방식을 도입했다(장현우, 2011; 양재규, 2020a). 장현우(2011)에 따르면 손해배상 가감표는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침해의 유형을 명예훼손과 초상권·사생활 등 기타 인격권침해로 구분하고, 매체유형별 기준액을 중심으로 가액 요소와 감액 요소를 적용해 최종 결과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가액요인에는 1) 악의성·고의성, 2) 피해지속성·회복곤란성, 3) 수치심·모욕·당혹감, 4) 표현방법 부적절성, 5) 사회적 평가의 정도가 고려되었으며, 감액요인으로는 1) 피해구제노력, 2) 공공성·공익성, 3) 보충성·긴급성, 4) 진실성·상당성, 5) 신청인의 진정성이 고려되도록 했다(장현우, 2011). 이후에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 산정을 위한 가감표는 몇 차례의 개선을 거쳐 ‘손해배상액 산정가감표 2.0’에 이르렀는데 현행 가감표는 기존의 가감요인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산정 기준액과 가감요인 반영 시의 액수를 높인 것이다(양재규, 2020b).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손해배상청구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보도로 인해 발생한 유·무형의 피해에 부합하는 적정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산술적으로 계산이 불가능한 무형의 정신적 고통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과도한 배상액 결정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고려해야하기에 적정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여러 방안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정정·반론보도와 같은 여타 피해구제 방법 또는 형사처벌 등 다른 법적 제도와의 관계 안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손해배상액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고려요소인 ‘매체 영향력’ 또는 ‘보도의 파급력(전파범위)’이 기술 발달과 함께 다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전통적인 언론 시장과는 크게 달라졌다는 점도 검토가 필요한 요소 중 하나다.

이 연구는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관련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전반적인 언론관련 손해배상 사건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특히 언론피해구제 제도 및 미디어 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특징적 변화가 나타난 시기는 언제인가?

〈연구문제 2〉 〈연구문제 1〉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분된 시기별로 손해배상 청구건수 및 인용액에는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 〈연구문제 2〉에 나타난 시기별 손해배상 청구건수 및 인용액 등의 차이가 미디어 환경 및 법제도적 변화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2. 연구대상 및 방법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제기된 언론보도 관련 손해배상 조정사건⁹⁾ 및 소송사건¹⁰⁾이다. 조정 및 소송사건의 연도별 손해배상 청구건수, 청구액 및 인용액 등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매년 발간하는 「조정·중재사례집(구 연차보고서)」 및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의 통계자료 중 해당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2005~2019년 조정 및 언론판결 손해배상청구 자료를 개별 매체 기준으로 재정리한 후 합산한 결과 전체 분석대상 건수는 조정 11,775건, 소송 2,908건¹¹⁾이었으며, 이 가운데 손해배상액이 인용된 건수는 조정 879건, 소송 1,176건이었다.

9) 언론중재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유형은 조정과 중재로 구분되나 대다수가 조정사건에 해당하고 중재사건의 상당수는 조정과정에서 중재로 전환된 경우가 많아 조정사건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10) 분석대상 소송사건은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하는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의 수록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수록된 언론판결은 명예훼손, 인격권 등의 키워드를 대법원 판결열람시스템에서 검색을 통해 수집된 것이다.

11)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사건의 경우 각 언론사에 대한 개별청구건수가 별도로 집계되고 있으나, 판결의 경우 1개 사건에 여러 청구권이 병합된 경우도 있어 비교를 위해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서 병합사건을 청구권별로 분리해 집계한 ‘청구별 결과’를 기준으로 하였다. 조정사건은 2014, 2015년 세월호 보도 관련 대량조정청구사건을 제외한 건수이다.

IV.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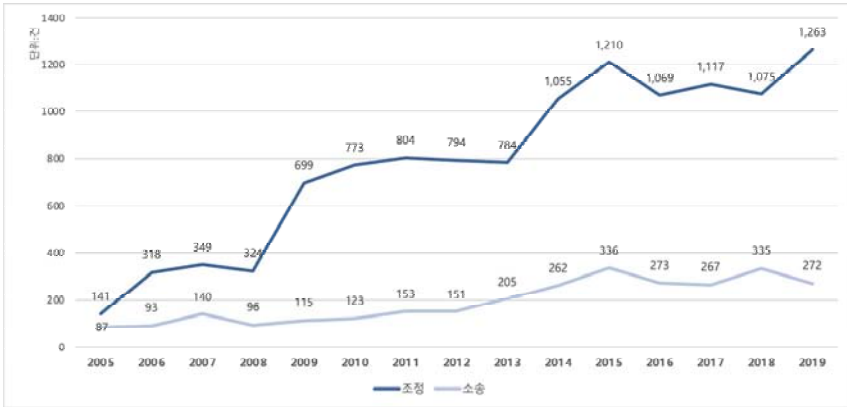
1. 연도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변화 추이와 특징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어떤 변화의 흐름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2005년부터 연도별 손해배상 청구건수 및 청구액, 인용액의 연도별 증감 추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손해배상 청구건수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손해배상 청구건수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08년에서 2009년,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는데 2014년의 경우, 세월호 참사 보도 관련 전체 조정건수가 19,048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량 조정사건을 배제한 경우에도 동일한 경향성이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세월호 보도 관련 대량 조정신청 사건을 제외한 조정사건의 손해배상 청구건수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림 1>과 같이 2014년 손해배상청구 건수(1,055건)가 전년도(784건)에 비해 약 3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시기 큰 폭의 손해배상건수 증가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언론 판결의 경우, 연도별 증가폭에 큰 특이점이 있었던 시기를 찾기는 어려웠다. 다만 평균적으로 100건 미만이었던 손해배상 청구건수가 2009년부터는 100건을 넘어섰고, 2013년 무렵에는 200건 이상으로 늘어나 조정사건과 유사한 시기에 증가세가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¹²⁾

12) 언론관련 판결의 손해배상 청구건수는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항목의 분석대상 건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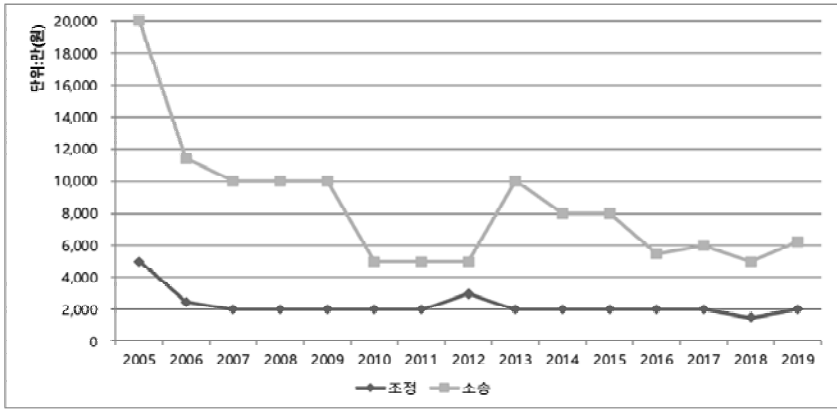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조정사건 및 언론관련 판결 손해배상 청구건수

다음으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손해배상 사건의 청구액과 인용액 변화를 살펴보았다. 손해배상 청구액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한 방법으로는 연도별 중앙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평균액의 경우 일부 최저액 또는 최고액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기에는 중앙액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권태상, 2020).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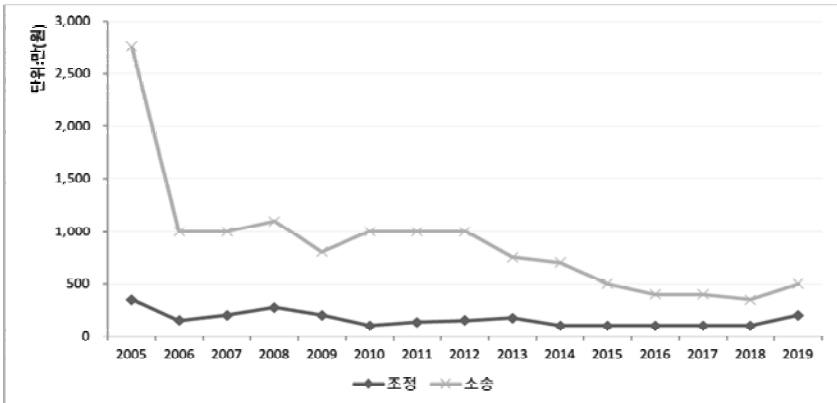
먼저 손해배상 청구액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그림 2〉와 같이 조정사건의 경우, 2005년의 청구액 중앙값이 5천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2006년부터는 꾸준히 2천만원 수준을 유지하다 2012년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긴 하였으나 눈에 띄는 증감은 없었다. 법원 판결의 경우에도 2005년 청구액 중앙값이 2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는데 2009~2010년 사이에 청구액의 중앙액이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낮아졌다가, 2012~2013년 사이에 1억원으로 다시 높아지는 변화가 있었으나 대체로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에 청구액 중앙값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조정사건의 경우, 세월호 보도 관련 대량 조정신청 사건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2014년 손해배상 청구액과 인용액의 중앙값은 각각 2천만원과 1천만원으로 동일했다.



〈그림 2〉 연도별 조정 및 소송사건 손해배상 청구액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연도별 인용액 추이 역시 청구액과 마찬가지로 연도별 인용액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법원 소송 및 조정사건 모두 2005년 이후 손해배상 인용액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조정사건의 인용액 중앙값은 100만~350만원, 소송사건은 350만~2,750만원으로 조정사건에 비해 소송사건의 인용액이 전반적으로 높고 금액대의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그림 3〉 참조). 또 한 가지 특징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사건과 법원 판결 모두 2008년



〈그림 3〉 연도별 조정 및 소송사건 손해배상 인용액

에서 2009년 사이, 2013년에서 2014년 무렵 인용액이 소폭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상 살펴본 손해배상 청구건수 및 청구액, 인용액의 연도별 변화 흐름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08년에서 2009년,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손해배상 청구건수가 다른 해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고 특히 조정사건에서 건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둘째, 청구액 중앙값에서는 조정과 소송 모두 특정 시기의 뚜렷한 변화를 관찰할 수는 없었으나 판결의 경우,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청구액이 낮아졌다가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셋째, 조정사건과 소송사건 모두 2009년과 2013년을 전후로 손해배상 조정액 및 인용액의 중앙값이 낮아지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2. 시기구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건수 및 인용액 변화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조정사건 및 언론관련 판결에서 손해배상 청구건수 및 청구액, 인용액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 2009년 및 2013년을 전후로 청구건수가 증가하거나 청구액 및 인용액 중앙값이 다소 변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제도적 측면에서 2009년과 2013년을 전후로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가장 큰 법제도적 변화로는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언론 조정·중재대상에 포함된 점을 꼽을 수 있다. 인터넷 기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매개, 유통하는 뉴스 플랫폼이 언론 피해구제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이후 언론법제 및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논의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포털을 언론조정·중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은 이승선(2011)과 김상우·이재진(2015)의 선행연구에서도 언론피해 구제제

도와 관련한 주요 변화 시점으로 구분된 바 있다.

언론피해구제 방법의 측면에서 또 다른 주요 변화는 2013년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일환으로 기사삭제청구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¹⁴⁾ 대법원은 민법 제751조 또는 제764조에 따라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요구하는 것 외에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미래에 생길 침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사삭제청구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하였다. 이와 함께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¹⁵⁾이 내려진 것을 계기로 디지털 미디어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인격권 침해와 해결방안 관련 논의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정정·반론보도청구 외에 기사의 열람·검색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언론피해구제의 새로운 방안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법제도적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언론조정 및 판결에 나타난 손해배상청구 추이의 변화 시점을 고려하여 1)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시기(이하 ‘제1시기’), 2)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 이후 시기(이하 ‘제2시기’), 3) 2013년 대법원 기사삭제청구 인용 판결 이후 시기(이하 ‘제3시기’)로 나누어 평균 손해배상 청구건수 및 인용액 등에 변화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먼저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 전후 및 2013년 대법원의 기사삭제청구 판결 전후 시기의 손해배상 청구건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각 시기별 손해배상 조정 및 소송건수의 평균값 및 전체 조정 및 소송사건의 평균값을 산출하였다.¹⁶⁾ 그 결과, 조정사건과 소송사건 모두 손해배상 청구건수의 시기별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조정사건에서는 2009년 이전과 이후 시기는 약 2.7배, 2013년 이전과 이후 사이에는 약 1.4배의

14)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15) 유럽사법재판소 C-131/12 ‘Google Spain and Google’

16) 조정사건의 경우, 2014년과 2015년 세월호 참사 보도 관련 대량 신청사건을 제외한 연도별 청구건수를 반영하였다.

청구건수 증가 경향이 나타났다. 소송 사건의 경우, 2009년을 전후해 평균 청구건수가 소폭 증가하였고, 2013년 대법원 판결 전후 시기에서는 더 크게 늘어났다(〈표 3〉 참조).

조정사건의 경우 2009년 전후 시기의 청구건수 변화가 크게 나타났는데 2009년 손해배상 조정건수가 처음으로 정정·반론보도 청구건수를 앞섰고, 전체 조정사건도 수도 1,573건으로 2008년 954건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언론중재위원회, 2010a).

언론소송 사건의 청구건수 변화 추이에서는 2013년 이후 시기의 소송 사건 수가 이전에 비해 대폭 증가한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제2시기(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와 비교하면 제3시기(2013년 대법원 판결~) 법원의 손해배상청구 평균건수는 약 2배, 전체 소송건수는 약 2.4배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조정사건의 경우 전체 사건 대비 손해배상청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8.5~37.0%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소송사건의 경우 제2시기의 전체소송사건 대비 손해배상사건 비율이 63.8%로 제1시기(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에 비해 약 3배가량 높아졌고, 제3시기에도 53.4%의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3〉 시기 구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건수

구분		제1시기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제2시기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	제3시기 (2013년 대법원 판결~)
조 정	손해배상 청구건수	283	768	1,081
	전체	992	2,076	3,170
	%	28.5	37.0	34.1
소 송	손해배상 청구건수	104	136	279
	전체	369	212	522
	%	28.2	63.8	5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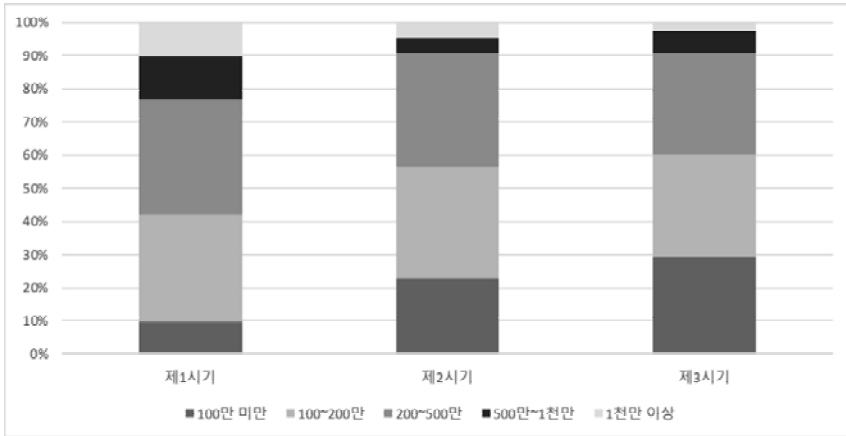
다음으로 각 시기별 손해배상 인용액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앞서 제시한 연도별 손해배상 중앙액의 각 시기별 분포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시기 구분에 따른 손해배상 인용액(중앙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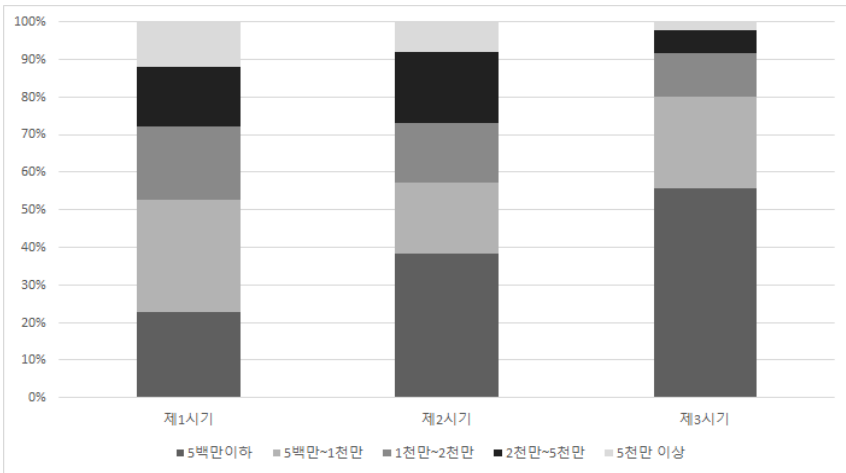
구분	제1시기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제2시기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	제3시기 (2013년 대법원 판결~)
조정	150만~350만원	100만~200만원	100만~200만원
소송	1,000만~2,750만원	800만~1,000만원	350만~750만원

조정사건의 경우, 2009년 법 개정 이후의 연도별 조정액 중앙값이 법 개정 이전보다 낮아졌고 2013년 전후 시기 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소송의 경우에는 제1시기 1,000~2,750만원에서 제3시기 350~750만원으로 손해배상액의 하향세가 더 크게 나타났다.

시기별 손해배상 인용액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조정·소송사건 손해배상 인용액의 금액대별 분포를 시기별로 구분해 보았다. <표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정사건에 비해 소송사건의 손해배상 인용액 중앙값이 더 높게 나타나는 차이는 있었으나, <그림 4>와 같이 조정사건의 경우 1백만원 미만, 판결은 5백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 비중이 크게 증가한 반면, 조정사건은 1천만원 이상, 소송사건은 5천만원 이상의 고액 사건 비중이 시기별로 점차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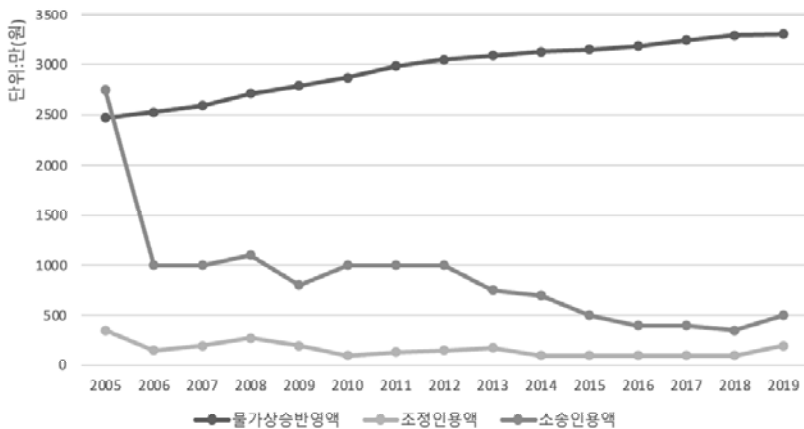


〈소송〉

<그림 4> 시기별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도

시기별 언론관련 손해배상 사건 인용액의 수준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낮아진 것인지를 가늠해보기 위해 통계청이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 기준) 변동을 반영해 제공하는 화폐가치 계산 시스템¹⁷⁾을 활용해 1990년대 언론소송 사건 손해배상 인용액 중앙값(2,050만원)¹⁸⁾에 연도별 물

가상승비율을 반영한 금액과 연도별 조정 및 소송 사건의 손해배상 인용액 중앙값을 <그림 5>와 같이 비교해보았다. 화폐가치 시스템에서 산출된 1999년에서 2019년 화폐가치 상승률은 약 1.6배였는데 이를 1990년대 손해배상액 중앙값에 대입하면 2019년 기준으로 약 3,300만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법원의 인용액 분포는 1천~2천만원, 조정사건은 그보다 낮은 500만원 이하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미루어보면 현재 언론관련 손해배상사건 인용액의 실질적인 수준은 20년 전보다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5〉 물가상승반영액과 조정 및 소송 인용액 비교

이상 언론중재법 개정이 이루어진 2009년과 대법원의 기사삭제청구 판결이 내려진 2013년을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해 언론관련 조정 및 소송사건의 손해배상 흐름과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제1시기에서 제3시기로 이동할수록 손해배상 청구건수는 증가하고 손해배상 인용액은 낮아지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용액의 하락 정도와 물가상승 지표

17) http://kostat.go.kr/incomeNcpi/cpi/cpi_ep/2/index.action?bmode=pay 참조

18) 조준원(2000) 참조.

를 비교해본 결과, 소송과 조정사건에서 인용되고 있는 손해배상액수가 물가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언론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손해배상액수의 하락폭은 더 크게 체감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3. 미디어 환경 및 법제도적 측면에서 본 손해배상 청구건수 및 인용액 변화 양상

가. 인터넷매체의 증가와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변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건수는 연도별 추이 및 시기별 구분 결과에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양재규(2020a)는 언론관련 민사 소송건수가 2008년 116건에서 2019년 334건으로, 언론조정사건도 2008년 954건에서 2019년 3,544건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인터넷매체 수의 증가와 관련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08년 대비 2019년 언론 관련 민사소송 판결 수는 3배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정기간행물 등록수가 2005년 7,536개에서 21,781개로 약 3배 늘어났다는 사실과도 일치한다. 정기간행물 중에서도 인터넷신문의 수는 2005년 286개에서 2019년 9,164개로 약 7.6배 증가해 현재 등록매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등록매체의 수, 특히 인터넷신문 등록 수와 손해배상 청구건수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연도별 전체 정기간행물 등록 수 및 인터넷신문 등록 수, 조정사건과 소송 사건의 손해배상 건수 간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¹⁹⁾ 그 결과, 연도별 조정 및 소송 사

19) 연도별 정기간행물 등록 수 및 인터넷신문 등록 수는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18313&vw_cd=MT_STOP_TITLE&list_id=113_STBL&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STOP_TITLE)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 자료(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Current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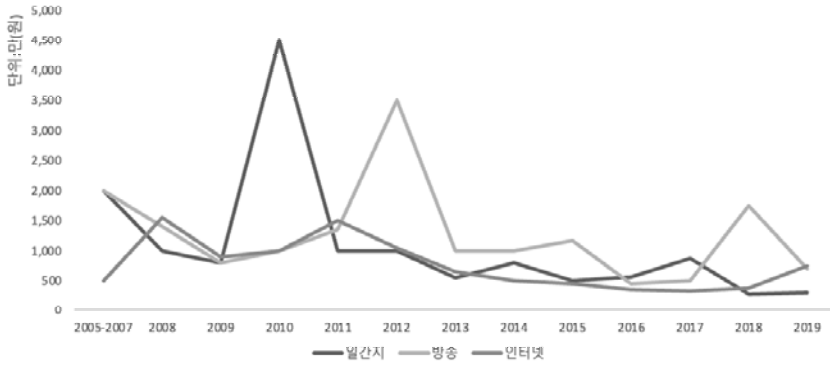
건의 손해배상 청구건수와 전체 정기간행물 등록 수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조정: $r=.959$, 소송: $r=.922$, $p<.01$)가 나타났으며 인터넷신문 등록 수와 손해배상 청구 조정사건($r=.935$) 및 소송사건($r=.931$) 간의 관련성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등록 수와 조정 및 소송 손해배상 청구건수 간 상관분석

구분	조정 손해배상건수	소송 손해배상건수
정기간행물 등록 수	.959**	.922**
인터넷신문 등록 수	.935**	.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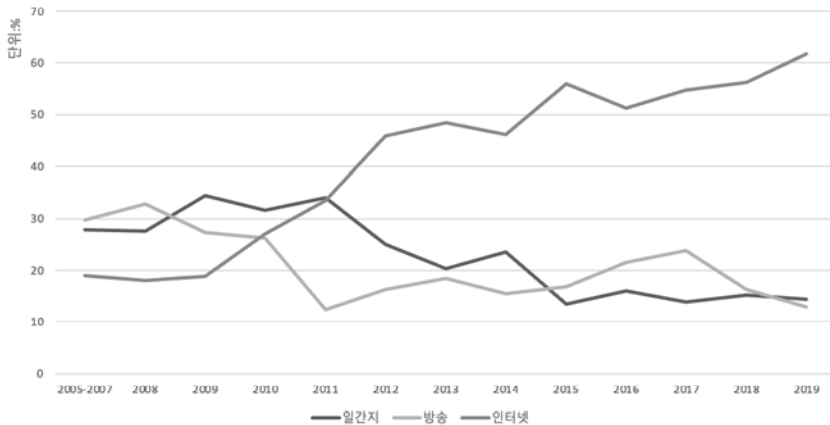
** $P<.01$

손해배상 인용액의 하락 현상을 미디어 환경의 맥락에서 검토하기 위해 연도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의 분류 기준에 따른 일간지(중앙일간지, 지역일간지, 경제일간지 등), 방송(지상파, 지역민방, 케이블 등), 인터넷매체(인터넷신문, 언론사닷컴 등)의 연도별 손해배상 인용액의 중앙값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림 6〉과 같이 일간지의 경우 2010년 4,500만원, 방송의 경우 2012년 3,500만원으로 일시적인 상승이 나타났으나 두 경우를 제외하면 매체별 인용액의 중앙값은 모두 2천만원을 넘지 못했다. 특히 2013년 이후에는 매체유형에 관계없이 인용액의 중앙값이 1,500만원 이하로 나타났으며, 인터넷매체의 경우 2008년과 2011년(각 1,500만원)을 제외하면 일간지나 방송에 비해 손해배상액수의 중앙값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6〉 언론 소송 매체유형별 손해배상 인용액 변화

전체 언론 소송 사건에서 매체유형별 비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본 결과, 〈그림 7〉과 같이 인터넷매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건수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비교해 일간지와 방송의 비중은 연도별로 다소의 증감은 있으나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11년 이후로는 인터넷매체 대상 소송사건이 일간지와 방송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에는 언론소송사건 가운데 60%가 인터넷매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



〈그림 7〉 매체유형별 언론소송사건 비율 변화

는 등 시간이 경과할수록 언론관련 소송에서 인터넷매체의 비중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정사건의 경우, 동일한 내용을 보도한 다수 언론사를 상대로 한 조정신청 사건이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복수의 언론사가 공동으로 손해배상하게 되는 사례가 나타나는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2014년 세월호 사건 발생 시 기독교복음침례교회와 유병언의 부인 권윤자가 235개 매체를 상대로 16,117건의 조정 신청²⁰⁾한 사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위 다량 조정사건을 제외하고도 2014, 2015년 손해배상 평균 조정액이 예년에 비해 낮게 나타난 원인을 세월호 사건 보도 관련, 구원파 신도들이 소액 손해배상청구를 여러 매체에 복수로 신청한 사건들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언론중재위원회, 2015a, 2016a).

이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기사에 대해 여러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표현의 정도나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특정 언론사에 전적으로 책임이 전가되기 보다는 보도를 한 복수 언론사들에 책임이 분배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 예로 2015년 모 리조트 붕괴 사건 당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한 조정사건에서 피신청인 신문사 및 신문사닷컴, 뉴스통신이 각각 지급한 손해배상 액수는 200~300만원 정도였지만 해당 언론사들의 손해배상액을 모두 합하면 약 1천만원에 이른다.²¹⁾

〈그림 6〉과 〈그림 7〉에 나타난 인터넷매체 대상 소송사건의 증가와 손해배상 인용액의 감소 경향, 동일 내용에 대한 다수 언론사를 상대로 한 조정신청 사례 등을 종합해보면 인터넷신문의 등장과 함께 지속된 매체 수 증가와 이에 따른 산업지형의 변화가 손해배상 청구건수 및 인용액의 하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005년 인터넷신문이 법률상 ‘언론’의 지위를 갖게 된 이후 미디어 시

20) 언론중재위원회 〈2014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p.99 참조

21) 2014서울조정376, 2014서울조정378, 2014서울조정380, 2014서울조정6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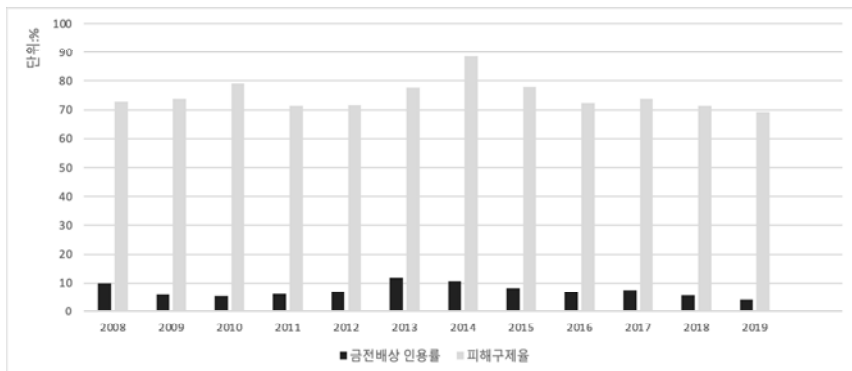
장에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포털이라 할 수 있다(김위근·황용석, 2020). 포털이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후, 포털 중심의 뉴스 소비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포털 사이트를 통해 기사를 노출시키려는 언론사간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포털 메인화면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매체 간 ‘주목 경쟁(attention struggle)’은 ‘낚시성 기사’, ‘어뷰징(abusing)’과 같은 부작용을 낳았고, 포털 뉴스에 대한 법적 책임과 규제 논의로 이어지면서 2009년 신문법상 포털을 ‘인터넷뉴스서비스’로 규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황용석, 2021). 이러한 인터넷매체 수의 증가 및 포털 등 뉴스 유통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매체 간 경쟁은 미디어 환경의 측면에서 조정 및 소송사건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즉, 일부 신문사나 방송사에 영향력이 집중되었던 과거와 달리 포털 등 뉴스플랫폼 내에서 신생 매체와 전통적인 언론사가 콘텐츠 공급자라는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면서 손해배상액의 산정요소로 고려되는 언론사의 규모와 영향력, 기사의 파급력 등을 가늠하기 어려워졌고 결과적으로 피해의 정도에 부합하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제약이 따르고 있는 상황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복수 매체를 통해 인터넷상에 확산된 경우, 유사한 내용을 보도한 다수 언론사에 배상 책임이 분배되는 경향이 나타나 개별 언론사가 지급하는 배상액이 낮아졌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 기사삭제청구권 인정 판결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변화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도 정정·반론보도 등의 법적 수단을 취할 수 있다. 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도 언론사가 손해배상이 아닌 다른 피해구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가 인용액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한다. 실제로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하는 등 보도 이후의 피해구제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감안

하고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액 산정표에서도 언론사의 피해 구제 노력이 감액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허만, 1999; 노만경, 2011; 양재규, 2020b 등).

조정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 중 실질적으로 금전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금전배상률)와 금액지급을 포함한 여타 구제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피해구제된 것으로 본 비율(피해구제율)²²⁾을 비교해보면 <그림 8>과 같이 연도별 피해구제율은 6~70%가량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금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종결된 비율은 통상 10%를 넘지 않았다. 이는 상당수의 손해배상 조정청구가 정정·반론보도 청구 등과 병합 처리되고 있으며 금전지급 외 정정·반론보도 등 다른 피해구제 방법들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언론조정 사건의 경우, 신청단계에서부터 기사삭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2020년의 경우 인터넷매체 대상 조정사건(2,945건) 중 16%(474건)가 기사의 열람이나 검색을 차단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정철운, 2021).



<그림 8> 연도별 금전배상 인용률 및 피해구제율

22) 언론중재위원회는 기각, 각하된 경우를 제외한 전체조정청구건수 중 조정성립 및 직권조정결정에 대해 양당사자가 동의한 사건, 기타 취하 등으로 종결되었으나 정정·반론보도문 게재 또는 금전지급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구제가 이루어진 사건 수를 합산하여 피해구제율을 산정하고 있다(언론중재위원회, <2019년 조정 중재사례집> 등 참조).

법원 소송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은 최근 들어 더욱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7년 1월 대법원은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²³⁾을 마련해 명예훼손 사건에서 일반적인 피해는 5천만원, 중대피해의 경우는 1억원을 기준 금액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책이 등장한 이후에도 손해배상액은 높아지지 않았으며 특히 앞서 시기별 구분에서 살펴본 결과, 2013년 이후 법원의 위자료 인용액이 더욱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2013년 대법원의 기사삭제청구 관련 판결 이후 기사삭제청구 소송 건수가 평균 5건 이내에서 2014년 34건, 2016년 36건, 2017·2018년 40건, 2019년 38건 등으로 상당히 늘어난 상황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한 사안으로 손해배상액수의 산정에 미친 요인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언론사의 기사삭제 조치 여부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몇몇 판결에서는 손해배상액수 산정에 언론사가 인터넷상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예컨대 원고 회사의 제품에 중대한 이상사례가 보고되었다는 취지의 게재를 게재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해 3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으나, 2심 법원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취지의 기사수정으로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했을 것으로 보고 배상액을 205,240,000원으로 감액하였다.²⁴⁾

23)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25&gubun=713> 참조

24) 서울중앙지법 2018. 6. 20. 선고 2017가합54130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20. 선고 2018나2037343 판결. 2심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부작용 논란이 계속 중인 것처럼 오해될 내용이 있어 이 사건 기사로 인한 가해행위가 수정된 기사로 인하여 완전히 종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기사가 원고의 손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

또 원고가 공동으로 출간한 대담집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기고문을 피고 언론사 홈페이지와 트위터에 게재해 결과적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고 판단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1심 판결(위자료 1천만원)에 비해 손해배상 인용액을 감액(위자료 500만원)하면서 “피고는 뒤늦게나마 이 사건 트위터 기사를 삭제하였고, 이 사건 홈페이지 기사에 대하여는 게재 당일 그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 제목을 수정함으로써 이 사건 트위터 기사의 링크를 통하여 위 홈페이지 기사를 접한 일반 독자들에게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한 점 등”을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변경한 근거로 제시하였다.²⁵⁾

이와 같이 언론조정 및 소송 사건에서 피해구제의 방법으로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조정 및 소송사건의 손해배상 산정에 언론사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기사삭제 또는 수정여부가 고려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와 방법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기에 최종 결정된 손해배상액에는 손해배상액 이외의 여타 피해구제 조치가 취해졌거나 취해질 수 있는지 여부가 일정부분 고려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의 언론조정사건 및 언론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언론관련 손해배상청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고, 나타난 현상들이 미디어 및 법제적 변화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탐색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해

었다.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0. 선고 2017가단514746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8나47501판결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반적인 손해배상 청구건수 및 청구액, 인용액의 연도별 추이 분석에서 손해배상 청구건수 및 인용액의 증감에 주요한 변화가 나타난 시기는 2009년 및 2013년 전후였다. 이 두 시기의 법제도적 주요 변화는 포털을 조정·중재대상에 포함하는 언론중재법 개정과 인격권에 기반 방해배제청구권의 일환으로 기사삭제청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었다. 이에 포털을 언론의 범주에 포섭해야 한다는 규제 논의가 받아들여지게 되기까지의 미디어 환경 변화 및 기사삭제청구권이라는 새로운 피해구제 방안의 도입이 손해배상 청구건수의 증가나 인용액과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터넷매체 수의 증가가 손해배상 청구건수 증가 및 인용액 감소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조정 및 소송사건에서 기사삭제청구라는 새로운 피해구제 방식이 손해배상청구와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되거나, 언론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파악하는 고려요소로 작용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이 연구는 특정 유목에 의해 분류되어 집계된 2차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연도별 데이터가 일관성 있게 유지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분석이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다층적인 분석을 진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 사건에 나타난 특성과 특정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거나 입증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법제도 및 미디어 환경 변화의 흐름 안에서 주요 시기별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어떤 특징과 변화를 나타냈는지 살펴보고 그 원인을 미디어 환경 및 법제적 변화에서 찾기 위한 단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언론보도로 인해 제기되는 손해배상 사건의 절대적 다수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안임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고통에 상응하는 적정 손해배상액 산정을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인터넷 중심의 매체 환경에서 발생한 피해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는 보다 활발히 전개될 필요가 있다. 특히 1990년대 언론관련 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수 보다도 낮은 수준의 손해배상액이 인용되는 사건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다만 언론피해구제의 한 방법인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결과적으로 나타난 손해배상액의 증감뿐만이 아니라 이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언론 피해구제 관련 법제도 및 언론 생태계의 변화와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미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관련 위자료 산정의 기준액을 상향하여 제시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손해배상액 산정표의 기준액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실질적인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개정 법안들을 통해 논의되고 있는 손해배상액수의 상한선을 높이는 방법이 최선의 해결책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데 고려해왔던 여러 요인들이 변화한 미디어 환경과 법제적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개선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 연구가 언론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손해배상의 효용성을 높이는 한편, 관련 논의의 폭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참고 문헌

〈단행본〉

- 김위근·황용석(2020). 〈한국 언론과 포털 뉴스서비스〉.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언론중재위원회 (2006). 〈2005년도 연차보고서〉.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_____ (2007). 〈2006년도 연차보고서〉.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_____ (2008a). 〈2007년도 연차보고서〉.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_____ (2008b). 〈2005-2007년도 언론소송 판결분석〉.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_____ (2009a). 〈2008년도 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_____ (2009b). 〈200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_____ (2010a). 〈2009년도 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_____ (2010b). 〈200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_____ (2011a). 〈2010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_____ (2011b). 〈2010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_____ (2012a).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_____ (2012b). 〈2011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_____ (2013a). 〈2012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_____ (2013b).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_____ (2014a). 〈2013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중재위원회 (2014b). <2013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_____ (2015a). <2014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_____ (2015b). <2014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_____ (2016a). <2015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_____ (2016b). <2015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_____ (2017a). <2016년도 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_____ (2017b). <2016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_____ (2018a). <2017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_____ (2018b). <2017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_____ (2019a). <2018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_____ (2019b).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_____ (2020a). <2019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_____ (2020b). <2019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논문>

- 권태상 (2020). 인격권 침해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 - 언론 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178호, 182-211.
- 김민정 (2021). 제21대 국회 언론개혁법의 쟁점 -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2021 미디어 관련 법률안의 쟁점 연속기획 긴급토론회>. 한국언론진흥재단. URL: <https://www.kpf.or.kr/front/board/boardCont>

entsView.do?board_id=246&contents_id=80b4cf17bc0e4c69a2c4577ea4a0423a

- 김동하 (2007). 인격권 보호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제도 -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한하여. <언론중재>, 통권 제104호, 5-38.
- 김상우, 이재진 (2015). 언론중재위원회 손해배상 제도의 기능과 효율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법>, 14(3), 173-211.
- 노만경 (2011). 언론보도관련 판결의 위자료 산정 현황 및 특징, <언론중재>, 통권 제121호, 7-33.
- 박종순. (2011). 손해배상조정의 활성화가 언론소송에 미치는 영향. <언론중재>, 통권 제120호, 30-45.
- 양경승. (2001). 언론중재제도의 법제사적 의미. <언론중재>, 통권 제78호, 6-16.
- 양재규(2020a). ‘소송 남발’은 기우... 언론 승소율은 늘고 손해액은 줄고. <신문과방송>, 2020년 10월호, 28-29.
- 양재규(2020b). 지정토론문.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입에 따른 법적·실무적 쟁점> 토론회 종합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URL: <https://www.pac.or.kr/kor/pages/?p=64&magazine=M02&cate=EM01&nPage=1&idx=1028&m=view&f=&s=>
- 윤경 (2005). 언론중재법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적 검토. <언론중재>, 통권 제95호, 30-41.
- 이봉수 (2005). 명예훼손 소송에서의 위자료 산정, <언론중재>, 통권 제97호, 64-81.
- 이재진, 구본권. (2008). 인터넷상의 지속적 기사 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법적 쟁점. <한국방송학보>, 22(3), 172-212.
- 이재진·박성순 (2015). 언론법제 연구의 어제와 오늘. <커뮤니케이션 이론>, 11(3), 213-260.
- 이창현 (2017). 慰藉料의 現實化 方案. <저스티스>, 59-89.
- 장현우 (2011). 손해배상액산정기준표(안) 및 구성요소 검토, <언론중재>, 통권 제121호, 53-63.
- 조준원. (2000). 1990년대 언론관련 손해배상판결의 사회과학적 분석. <언론중재>, 통권 제76호, 33-53.
- 함석천. (2005). 손해배상청구권의 도입과 언론중재. <언론중재>, 통권 제94호, 42-53.

허만 (1999). ‘언론보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위자료’, <청주법률논단>, 제1집, 107-130.

황용석 (2021). 뉴스 이용 집중 vs. 이용자 점점 확대… 빛과 그림자 모두 낚은 포털, <신문과방송>, 2021년 2월호, 8-13.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20. 선고 2018나2037343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6. 20. 선고 2017가합541309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7. 10. 선고 2017가단5147460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11. 7. 선고 2018나47501 판결

유럽사법재판소 C-131/12 ‘Google Spain and Google’

<기타>

김겨레 (2021. 2. 10.). [리얼미터] ‘언론에 정별적 손해배상’ 찬성 61.8%. <이데일리>. URL: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59846628949208&mediaCodeNo=257>

김남영 (2020. 11. 16.). 연예인 이어 일반인도 노린다…‘악플민국’의 민낯, 사이버 명예훼손 5년새 2배 급증. <한국경제>. URL: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111363751>

정철운(2021. 3. 12.). 2020년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3924건, 매해 증가세. <미디어오늘>. UR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372>

■ ABSTRACT

Analysis of Time Series Data Related to Claims for Damages of the Press Report

Kim, Jung Min
PhD coursework, Konkuk University

Hwang, Yong Suk
Professor, Konkuk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s cases from 2005 to 2019 and the court's ruling on the press report.

Among the findings, the number of damage claims increased, while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gradually decreased.

Second, after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was implemented, changes in the legal system were reported before and after revising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in 2009 and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right to delete articles in 2013.

As a result, increases in the number of claims for damages and decreases in compensations were more pronounced over time.

Third and last, in terms of changes in the media industry, there was a notably sharp increase in the number of media outlets, and their influence also extended. Analyses showed that changes in the legal system also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is transi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a contextual approach to changes in the legal system and the media industry about damage compensation is

required.

Keywords: defamation, compensation for damages, personal rights, press arbitration

[논문투고일 2021. 3. 14. 논문수정일 2021. 4. 8. 게재확정일 2021. 4. 8.]